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복무기간 단축 >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42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8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2호)

가.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5.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8.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

가. 발 의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2호)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

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들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정동만의원안, 서영석의원안)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서영석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정동만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생략)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u>3년간</u>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 ----- ----- ----- -----2년 2개월 간----- ----- ----- -----.	② ----- ----- ----- ----- -----2년 2개월 간----- ----- ----- -----.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현행	정동만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군사교육소집을 하 되, 군사교육소집 기 간은 복무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원할 경우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²⁾되어 3년간 복무해야 함.

□ 개정안은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10개월 단축하려는 것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³⁾되어 온 반면에,

공중보건 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의 복무기간은 변동없이 유지되어⁴⁾ 상대적으로 장기인 복무기간 때문에 의무 분야 현역장교,

1)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무장교를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을 공보의 등으로 편입

3) 2020.6.2.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육군기준)

공중보건 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취지를 가짐.⁵⁾

<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신규 편입 현황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211	1,318	1,035	1,050	1,114	716	743

□ 다만, 같은 보충역 중 공중보건 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와 유사한 편입 요건(전문면허 보유 여부) 및 복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공중보건 의사 등과 같은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했을 때,

보충역 중 특정 분야의 의무 복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1997년 공중보건 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1999년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제도 시행 시부터 복무기간 3년 유지

5) 참고로 동 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0496,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25.5.14.)됨.

< 보충역 및 장교 등의 복무기간 비교 >

구분		의무 복무기간	구분		의무 복무기간
보 충 역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3년	장 교	사관학교	10년
				학사장교	3년
				학군장교	2년 4개월
				특수병과 (의무·법무 등)	3년
				일부 기본병과 (5급공채 합격자 등)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부 사 관	단기복무	4년
	산업기능요원	34개월		RNTC	

□ 한편, 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등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현재 3주로 하고 있음.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충역 및 장교 등의 복무기간 및 교육기간 비교 >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구 분	복무기간 (교육기간)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자격 : 의사) 공익법무관(자격: 변호사) 공중방역수의사(자격: 수의사)	3년(3주)	군 의 관(자격: 의사) 법무장교(자격: 변호사) 수의장교(자격: 수의사)	3년 (4~5주)
		학사장교	3년(16주)
전문연구요원	3년(3주)	육군 ROTC	2년 4개월 (12주)

현재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에 편입된 경우 실시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현행법 제34조제3항6)에 따라 3년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중보건 의사 등은 현역장교인 군 의 관과 동일한 자격요건·선발절차를 통해 유사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역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구 분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여부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미산입
군 의 관 법무장교 수의장교	미산입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산입

6)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편입)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서영석의원안)은 공중보건 의사 등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 사유와 마찬가지로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나,
- 마찬가지로 유사한 편입 요건(전문면허 보유 여부) 및 복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병역법」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방부 및 병무청은 공보의 등의 복무기간은 의무장교 및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편입지원율을 높여

7)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공중보건 의사는 미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또한 공중보건 의사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19헌마472, '20.9.24.)

<관결요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가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취지, 신분, 군사교육소집시기, 병역의무 이행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의료취약지역 진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⁸⁾.

- 법무부는 타 보충역 및 현역장교와의 형평성, 병역자원 현황·추세, 전문성 있는 병역미필 자원의 효율적·공익적 활용, 병역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8)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함.